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분개정(안) 대비표

2014. 11.



한국도로교통협회
KRTA Korea Road & Transportation Association

기 존	개 정(안)	개 정 사 유
<p>3.10.2 비파괴검사</p> <p>(5) <u>초음파 탐상검사</u> <u>초음파 탐상검사</u>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p>	<p>3.10.2 비파괴검사</p> <p>(5) <u>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u>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 및 초음파</u> <u>탐상검사</u>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u>결함</u>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p>	<p>기존에는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종점부에 대해 일부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최근 방사선 취급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됨(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2014년 11월22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방법과 비교하여 정확성, 기록성 등 객관적 평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검사 방법인 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p>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1) 일반사항</p> <p>②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u>방사선 투과검사</u> 또는 <u>초음파탐상검사</u>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에 <u>초음파탐상검사</u>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 대신 <u>초음파탐상검사</u>로 대체할 수 있다.</p>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1) 일반사항</p> <p>② 완전용입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u>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 또는 <u>초음파탐상검사</u>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에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 대신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로 대체할 수 있다.</p>	

기 존	개 정(안)	개 정 사 유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u>방사선투과검사</u>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p>① 아래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 종점부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2매)를, 나머지 100%에 대해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다.</p>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2) 주부재의 완전용입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u>방사선투과검사, 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p>① 아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 종점부에 대해 <u>각각 300mm 이상 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 또는 각각 1매의</u> 방사선투과검사를, 나머지 100%에 대해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다.</p>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6) 현장용접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p>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u>방사선투과</u> 또는 초음파탐상 검사로 전수 검사한다.</p> <p>② 강바닥판의 데크플레이트간 용접부는 <u>방사선투과검사</u>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u>방사선투과검사</u>를 할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을 <u>연속해서 2매</u>, 중간부에서는 <u>1m당 1매</u>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점과 종점에서 <u>1매</u>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u>2매씩</u> 검사한다. <u>방사선투과검사</u>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1m의 범위에</p>	<p>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p> <p>(6)현장용접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p>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p> <p>② 강바닥판의 데크플레이트간 용접부는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를 할 경우에는 시점부와 종점부를 각각 500 mm, 중간부에서는 1 m당 300 mm(최소 500 mm)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종점에서 각 300 mm를 검사한</p>	

기 존	개 정(안)	개 정 사 유
<p>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u>방사선투과검사</u>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할 경우에는 용접이음부 전 길이를 검사한다.</p>	<p>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 mm 검사한다.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1m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u>위상배열(또는 동등 이상의) 초음파탐상검사</u>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할 경우에는 용접이음부 전 길이를 검사한다.</p>	